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(이장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2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4.

발 의 자:이장섭·강민정·임호선

양정숙 · 이병훈 · 박덕흠

도종환 · 인재근 · 윤영찬

강훈식 • 홍성국 • 이규민

엄태영 • 변재일 • 이용선

김용판 · 한병도 · 오영훈

김승원 · 김영배 · 신영대

박광온 • 조수진 • 소병철

의원(2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5일 제정되었음.

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,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70년 가까이고통받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상

황임.

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,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설치 목적을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에 만한 사항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4조).
- 나.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되, 그 액수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판결로써 지급한 위자료 총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(안 제11조).
- 다.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 니하도록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규정을 신설함(안 제23조).
- 라. 추모공간 등의 조성, 추모행사 개최,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단,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 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25조).

- 마.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(안 제26조).
- 바.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시행하고,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9조).

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, 그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 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노근리사건"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 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.
- 2. "희생자"는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·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
- 3. "유족"은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직계

존속·비속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,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.

- 4. "희생자심사"는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 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과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노근리사건에 관하여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·결정과 명예회 복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 - 2.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(이하 "보상금 등"이라 한다)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
 - 3.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 - 4. 위령탑건립 등 위령사업 및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에

관한 사항

- 5.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6.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·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,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자문기구의 설치 등)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
 -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6조(실무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소속하에 노

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

-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- 1.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
- 2.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- 3.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
- 4. 노근리평화공원 조성·운영 등 위령사업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.
-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·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은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·보상 활동에 관한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그 활동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.
-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)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(법률 제0000

- 0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부터 1년 이 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 또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관계기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관 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·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 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.
- 제8조(불이익처우 금지)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- 제9조(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)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

-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활동보고서 작성)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의 안전보장,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보고서의 작성, 보고,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보상금)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 - 1.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: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 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 - 2.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: 제1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

- ②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 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.
- ③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의료지원금) ①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·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유족의 권리) 유족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법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.
- 제14조(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및 결정)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법 시행 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한다.
 - ③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

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

- 제15조(결정서 송달) ① 위원회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,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6조(재심의) ①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결정, 보상금등 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4조제3항 중 "120일"은 "90일"로 본다.
 -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) ① 제15조제1항(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 - ②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

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
- 제19조(조세 면제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제20조(결정전치주의)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제15조제1항(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- 제21조(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 등) ①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「국가배상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있다.
 - ② 신청인이 제17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노근리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- 제22조(보상금등의 환수)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자
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
- 2. 잘못 지급된 경우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.
- 제23조(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)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 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4조(배상 의제)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(賠償)으로 본다.

- 제25조(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 - 1. 위령공원·위령묘역 등 추모공간 조성 및 기념공간 건립
 - 2. 희생자 추모 및 기념 행사 개최
 - 3. 추모공간, 기념공간 및 노근리사건 현장의 보존·관리
 - 4. 국내외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사업
 - 5.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사업

- 6.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- 7. 그 밖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사업
-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) ① 제25조에 따른 재단등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희생자와 그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)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28조(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) 6·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정정을 할 수 있다.

- 제29조(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·시행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 -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 - ⑤ 국가등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 강관리를 위한 노근리트라우마치유센터를 노근리평화공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⑥ 제5항에 따른 노근리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, 노근리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시효)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 다만,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.

- 제31조(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)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· 실무위원회의 위원·직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 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, 정직, 감봉,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위원회는 희생자·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.
- 제3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·실무위원회의 위원,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 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
 -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 - ③ 제23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희생자 및 유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각각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및 실무위원회로 본다.
- 제4조(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